

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수련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1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4. 4.

발의자 : 이수련, 김지훈(국), 한근수,
김영실, 전해연, 박윤옥,
한송연, 김동훈, 정현미,
원주영, 김지훈(민), 이정애,
김상수, 손정자

1. 제안 이유

남양주시립박물관의 전시해설사 운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이용자에 대한 지역 역사 사료의 이해를 돕고 박물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주요 용어 정의(안 제2조)

- “전시해설사” 정의 추가

나. 전시해설사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4조)

3. 일부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6. 관련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
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“전시해설사”란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와 관련된 설명을 해주는 안내인을 말한다.

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제35조 및 제36조로 하고,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(전시해설사 모집 및 운용) ① 시장은 박물관 전시 안내 및 해설 등을 위하여 전시해설사를 모집·운용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된 전시해설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제34조 · 제35조</u>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“전시해설사”란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와 관련된 설명을 해주는 안내인을 말한다.</u></p> <p><u>제34조(전시해설사 모집 및 운용)</u></p> <p>① <u>시장은 박물관 전시 안내 및 해설 등을 위하여 전시해설사를 모집·운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된 전시해설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35조 · 제36조</u> (현행 제34조 및 제35조와 같음)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제34조(전시해설사(도슨트) 모집 및 운용) ① 시장은 박물관 전시해설 등을 위하여 전시해설사(도슨트)를 모집·운용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된 전시해설사(도슨트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시립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매년 편성되고 있는 전시해설사(자원봉사자) 활동보상금 예산을 활용하여 실비 보상이 가능하며, 모집된 도슨트에게 실비를 보상할 시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.
- (비용추계) 30,000원 × 5명 × 4회 × 12월 = 7,200천원

4. 작성자

-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장 강호진

☑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
제2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,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·육성,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